

# 제천시사무의 읍·면·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(안)

## 經緯說明

### <當初要求案>

#### ○ 提案事由

責任과 權限이 不分明한 사무의 責任과 權限을 明確히 하여 問題點을 해소하고, 市長의 權限 事務中 邑·面·洞에 委任하는 事務를 調整하여 行政의 能率과 주민 편의를 도모코자 함.

#### ○ 主要骨子

##### • 邑面에 委任

- 당초 42건 → 철회24, 추가26, 부서조정1, 개정44(增2)

##### • 洞에 委任

- 당초 12건 → 철회4, 추가21, 개정29(增17)

##### • 内部 委任 規程폐지

- 본 조례 개정과 동시에 “제천시 내부 위임 규정”은 폐지

### <再議要求>

#### ○ 理由

조례안의 별표 1,2,建設課 所管사무중 河川敷地占用 및 권리의 讓渡 · 譲受, 公有水面관련 事項等은 管理廳이 建設部 또는 市道로 되어 있는 事項도 있어 이런경우 管理廳의 승인없이 再委任이 不可함.

#### ○ 要求事項

再審하여 否決要望

## <再議案 檢討>

### ○ 再議의 性格

- 재의 요구는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自治團體長의 일종의 “拒否權行使”임

### ○ 審議 對象

재의 요구는 당초 議決事項에 대한 贊·反심의만 가능하며 再議要求 절차 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審議 不可

### ○ 根據法

####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

地方議會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의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.도에 대하여는 內務部 장관이, 시.군에 대하여는 시.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방의회에 이유를 불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.

### ○ 議決 및 方法

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전과같이 의결되면 조례로서 확정, 반대로 부결되면 폐기됨(지자법제159조 제2항)

### ○ 原案대로 可決時

지자법 제159조 제3항 또는 4항에 의거 처리

#### • 제3항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 요구한 의안중 재 의결된 사항이 法에違反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提訴 할 수 있다.

#### • 제4항

내무부장관 또는 시.도지사는 再議決된 사항이 法律에 違背됨에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訴를 提起하지 않을 때에는 提訴를 指示하거나, 직접 제소와 執行停止 決定이 可能

## ○ 檢討意見

本 조례는 문액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할 수 있음

즉, 시에서는 知事이상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規則을 制定할 것인바

본 문안대로 한다해도 시장 權限 内만 規定짓는것으로 판단하여 관리 區別없이 문액을 잡았고 도에서는 條文自體에서부터 시장 權限과 지사이상 관리청의 權限을 區別지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

본 조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위 상반 해석을 우려 이를 지적하였으나 도와의 問議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으로 思料됨

## ※ 參考事項

### <當初 條例案 檢討>

#### ○ 補完要求

— 조례 體係의 不合理

— 誤 · 脫字修正

— 法條文 適用 錯誤

#### ○ 不合理點 指摘

- 세정과 소관사항중 도로사용료 부과징수는 지방도의 경우 시장, 군수에게 위임하였으나 읍면동에 제 위임시 사전 同意가 必要
- 建設課 소관 사항중 금번 再議 要求내용인 공유수면관련, 하천 관련 외에도 도로관련 事項까지 도지사 권한의 제위임 승인 여부 지적

#### ○ 上程經緯

- 총무과 : 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문 내용중 시장 權限內만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고 시장 권한외의 사항은 별도 規則으로 제정하라는 도의 지시가 있었음.
- 전문위원 : 再議지시가 우려되니 반드시 타 시.군과 확인하고 도에 文脈상 問題 없는지 문의요구
- 총무과 : 도에 확인결과 問題없다고 답변
- 전문위원 : 檢討報告시 위 지적사항중 지사권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제정키로하고 시장 권한 事項만 規程하는 것으로 검토보고